

November 22, 2019**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10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11. 14. ~ 11. 20.)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2019. 11. 19. 제371회 정기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안 및 다음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엄선하여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1]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관련

2019. 11. 18.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함. 금번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에너지 신산업 육성, 깨끗 안전한 에너지 공급, 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분산형 에너지 확산별로 총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 선정 및 집중 지원, ②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센터, ESS 화재 안정성 검증센터,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 확대, ③ Post R&D 도입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확산 강화 등이 있음. 12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참고자료\] 에너지기술과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



[산자부2]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기준 고시 개정

2019. 11. 13.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가구) 안전기준」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본 개정안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동보드'의 안전기준 별도 신설, ② 어린이 놀이기구에의 사용가능한 소재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 ③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 면제 등이 있음

[\[참고자료\]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전동킥보드,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참고자료\]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참고자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금융위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2019. 11. 14.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 ②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③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기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2019. 11. 19.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종 확정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 및 위반시의 형사제재, ② 재무 경영현황, 대출규모 등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 ③ 법정협회에의 가입의무화 등이 있음. 향후 2019. 11. 26. 공포, 2020. 8. 27. 시행될 예정임

[참고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3] 아세안 지역 금융분야 협력방안 발표

2019. 11. 19. 아세안 지역 금융당국과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아세안 국가의 금융회사 영업활동 건전성 감독, ② 지급결제 통합자금수납시스템 등 IT 분야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③ 핀테크 기업 진출 지원 강화, ④ 아세안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등이 있음

[참고자료] 아세안 지역 금융분야 협력 성과와 주요 특징



[참고자료] 아세안지역 금융협력 성과 및 추진방향



[금융위4] 금융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2019. 11. 15.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글로벌금융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금융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핀테크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출현 및 성장 지원, ② 신남방국가 등에서의 핀테크기업 진출 기반 마련, ③ 금융회사 임직원의 IT 및 핀테크 관련 교육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 보도자료



[참고자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



[금융위5]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발표

2019. 11. 18. 최근 5년간 총 140사에 대한 감리 실시결과, 평균 지적률 31.4%로 회계분식 사전예방 및 사후적발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에도 ① 적합성 높은 심사대상 기업선별,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감독방식 추진, ②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 예정임

[참고자료]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 발표

2019. 11. 18.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체 50~22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②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현행: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 개정 계획: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가능), ③ 사업장별 외국이 고용허용한도(E-9)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주52시간 관련 입법 불발시 정부 보완대책의 방향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확정

2019. 11. 20.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이 시행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 지정, ②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을 허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의 그간의 분쟁 사례를 참고한 세부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예시, ③ 행정예고(안)에서 제시한 법 위반 예시 규정 중 불명확한 규정 수정 및 삭제 등이 있음

[참고자료]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국토부1]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착수

2019. 11. 20.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함. 이번 사업을 통해 ① 전국 권역의 고속철도 확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② 영남 내륙지역의 교통 선택가치 개선(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③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대로 단축(충북선 고속화), ④ 대구지역 화물운송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철도교통 편의성 향상(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 등의 효과를 기대

[참고자료]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본궤도 진입



[국토부2]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발표

2019. 11. 19. 일자리 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의 대개조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중장기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② 산업단지 스마트화, ③ 청년인재 양성 및 취업연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 본격 추진



[참고자료]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임. 이에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세액감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2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의원 등 15인\)\]](#)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가맹거래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신설하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부과하며, 가맹거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 가맹희망자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입는 손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를 입은 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우리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재, 부품, 장비(이하 “소재 등”이라 함)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 등 국산화를 위한 R D 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재 등 국산화를 위한 장비 원자재 등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해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 등을 대기업 등이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입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자 함(안 제104조의30 및 제118조의3 신설)

3. 제371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2019. 11. 19. 제371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총 10개 상임위 소관 8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일명 ‘국내유턴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건의 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선별하였는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1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 의결 법안 현황]

상임위	의결 법안수	상임위	의결 법안수	상임위	의결 법안수
정무위	2	행안위	17	환노위	1
교육위	8	문체위	1	국토위	6
과방위	16	농해수위	14	-	-
국방위	3	산자위	20	-	-

(총 10개 상임위, 88개 법안)

[제371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주요내용	파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방위 대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근거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등을 추가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방위 대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5%에서 3%로 조정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자위 대안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불성실 이행 시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벌칙·과태료 규정 신설 등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재현 의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신설하여 냉열이용자에게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자위 대안	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동일성 인정대상을 같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명시, 자금지원 대상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를 신설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자위 대안	분양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시점을 ‘공장설립완료시점’으로 명확화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산단 관리기관에게 이양 등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자위 대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보호를 위해 방법발명의 범위를 확대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자위 대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규환 의원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명시 등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관영 의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삼화 의원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 및 취소시 청문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재호 의원	대학 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여 산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개최일시	토론회명	개최의원	장소
정무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리테일 혁명 : T커머스 발전 방안 세미나	이원욱(민)	회관 제2소회의실
교육위	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 일자리	장석춘(한)	회관 제3간담회의실
과방위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최운열(민)	회관 제2세미나실
국방위	4차 산업혁명시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정책과 지원체계	윤준호(민)	회관 제3세미나실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전략적·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판교

베이징

상해

호치민

하노이